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1. 2. 4 선고 2020가단11007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고C

소송대리인 D

변론 종결2021. 1. 14.

판결 선고2021. 2. 4.

주 문

1. 피고와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0.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2. 10. 접수 제814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 등의 발생

- 1) F 주식회사는 2018. 3. 5. E에게 16,354,700원을 지연이자율 연 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2) F 주식회사는 2020. 6. 10. 원고에게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2020. 6. 12. E에게 내용증명으로 이를 통지하였다. 그 당시 E의 위 채무는 연체되어, 원금 14,583,617원, 수수료·이자·법적비용 등 586,603원이 있는 상태였다.

나. 증여계약의 체결 등

- 1) E은 2019. 12. 10. 자신의 배우자 D의 자녀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2) 주문 기재 증여계약 체결 당시 E의 재산 상태1) 는 다음과 같다.

가) 적극재산(합계 7,300만 원)

-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시가 4,000만 원)
- (2) 산타페 차량 (시가 3,300만 원)

나) 소극재산(합계 8,077만 원)

- (1)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 원금 1,458만 원2) (2) 원고에 대한 신차 대출금 채무 원금 1,378만 원3) (3) G조합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금 2,429만 원
- (4) H에 대한 채무 원금 557만 원
- (5) I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원금 2,256만 원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3호증, 을 제1·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원고가 양수한 E에 대한 신용카드 대출금 채권이 주문 기재 증여계약 체결 이전인 2018. 3. 5. 이미 발생한 이상, 원고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 1) E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 D의 아들인 피고와 주문 기재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킨 것은 원고 등 자신의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E과 피고의 악의는 모두 추정된다.

2) 피고는 E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고, E·D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아래와 같이 이유가 없다.

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제3자는 물론 직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4) 피고 명의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기재되어 있지 않고, 피고는 E의 배우자가 아니어서 피고가 재산분할약정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도 없으며, 위 등기추정력을 뒤집을 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없다.

나) 피고의 위 주장에 따르면, ①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E·피고가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된 증여계약에 따라 마쳐진 것인데, 이는 그 자체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5) ②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가 E·D의 재산분할약정 및 D·피고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마쳐진 것이어도, D·피고의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효인 이상, 역시 그 자체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증여계약 체결 당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항변하나,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 6) 앞서 본 피고에 대한 악의 추정을 뒤집어 피고가 선의임을 인정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가 없다.

라. 결론

피고·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10.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 12. 10. 접수 제8140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사최누림

별지

1) 1만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 원고는 증여계약 체결 시인 2019. 12. 10. 기준 채무 원금이 1,578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20. 6. 12.자 채권양수 통지서에도 채무 원금이 1,458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금액으로 인정한다.

3) 원고는 증여계약 체결 시 기준 채무 원금이 1,997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2018. 2. 27. 등록되어 2020. 8. 19. 변동된 대출개설정보의 원금도 1,378만 원인 이상(갑 제9호증), 이 금액으로 인정한다.

4)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1977. 6. 7. 선고 76다3010 판결 등 참조

5)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다카68 판결 등 참조

6)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